

「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
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
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교육부 (교원정책과)
연 월 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」이 제정(법률 21446호, 2026. 3. 5. 제정, 2026. 7. 1. 시행)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(이하 “통합특별시 교육청”) 출범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배정 대상에 ‘통합특별시’를 반영하고, 시·도별 초·중등 교사 정원 배정 시 교육 현장의 정책 수요 및 정원효율화 실적 반영 규모를 현행 총 정원의 1% 이내에서 5% 이내로 확대하여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명칭 개정(안 제2조)

- 1) “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”를 “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”로 함

나. 시도교육청별 초·중등 교사 정원 배정 시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(안 별표 2조와 별표 3)

- 1) 교육 현장의 정책수요 및 정원효율화 실적 반영 규모를 현행 총 정원의 1% 이내에서 5% 이내로 확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기간 : 2026.5.29. ~ 7.9. (40일)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교육부령 제 호

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
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
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”를
“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”로 한다.

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 배정의 기준) 「지방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<u>특별시·광 역시·특별자치시·도</u> 및 특별 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에 배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다. 다만, 「신행 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 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 본계획의 시행 등으로 세종특별 자치시 소재 공립의 각급 학교 에 국가공무원을 추가적으로 배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 ·도별 정원 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.	제2조(정원 배정의 기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특별시·통합</u> <u>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</u> <u>도</u>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5.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
[별지]

■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[별표 2]

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(제2조제2호 관련)

구분	배정기준
1. 교장 및 교감	가.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 나. 신설학교의 경우 총 정원이 증원된 범위에서 증원 배정하고, 학교가 통·폐합된 경우에는 감원 배정
2. 교사	가. 총 정원의 100분의 95 이상은 ‘학생 수 구간 구분에 따른 학교별 교사 수’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하되, 배정 결과를 해당 시·도의 전년도 교사 정원과 비교하여 증감 규모를 산출하고, 증감해야 할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서 증감(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)하며,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퇴직자 수만큼만 감원 나. 총 정원의 100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수요, 해당 시·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전년도 신규 교사 선발 인원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

비고

1. 제2호가목에 따라 배정하는 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.

▪ 시·도별 배정 교사 정원 = $\sum(\text{학생 수 구간}^* \text{에 속하는 공립초등학교별 교사 수}^{**} \times \text{해당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시·도별 공립초등학교 총 수})$ (※ 전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,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)

※ 정원이 남는 경우에는 시·도의 전년도 초등교사 정원 비율에 따라 배정하고, 정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원되는 시·도의 전년도 초등교사 정원 비율에 따라 증원 규모를 조정한다.

※ 분교장은 본교와 별개의 공립학교로 본다.

* 학생 수 구간: 교육부장관이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구간을 정하여 공립학교를 분류한 것

**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공립초등학교별 교사 수 = $\text{해당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전국 공립초등학교 소속 교사 총 수} / \text{해당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전국 공립초등학교 총 수}$

2. 제2호나목에 따라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경우, 시·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*과 전년도 신규 교사 선발 인원, 전년도 제2호 나목에 따라 추가 배정된 정원의 배치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
* 정원효율화 실적: 전년도 일방전입을 받은 교사 수, 전년도 학교 통·폐합으로 감축한 교사 수,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교사 수 등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·도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

중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(제2조제3호 관련)

구분	배정 기준
1. 교장 및 교감	가.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 나. 신설학교의 경우 총 정원이 증원된 범위에서 증원 배정하고, 학교가 통·폐합된 경우에는 감원 배정
2. 교사	가. 총 정원의 100분의 95 이상은 ‘학생 수 구간 구분에 따른 학교별 교사 수’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하되, 배정 결과를 해당 시·도의 전년도 교사 정원과 비교하여 증감 규모를 산출하고, 증감해야 할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서 증감(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)하며,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퇴직자 수만큼만 감원 나. 총 정원의 100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수요, 해당 시·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전년도 신규 교사 선발 인원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

비고

1. 제2호가목에 따라 배정하는 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.

▪ 시·도별 배정 교사 정원 = $\sum(\text{학생 수 구간}^* \text{에 속하는 공립중등학교별 교사 수}^{**} \times \text{해당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시·도별 공립중등학교 총 수})$ (※ 전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,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)

※ 정원이 남는 경우에는 시·도의 전년도 중등교사 정원 비율에 따라 배정하고, 정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원되는 시·도의 전년도 중등교사 정원 비율에 따라 증원 규모를 조정한다.

※ 분교장은 본교와 별개의 공립학교로 본다.

* 학생 수 구간: 교육부장관이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구간을 정하여 공립학교를 분류한 것

**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공립중등학교별 교사 수 = 해당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전국 공립중등학교 소속 교사 총 수/해당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전국 공립중등학교 총 수

2. 제2호나목에 따라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경우, 시·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*과 전년도 신규 교사 선발 인원, 전년도 제2호 나목에 따라 추가 배정된 정원의 배치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
* 정원효율화 실적: 전년도 일방전입을 받은 교사 수, 전년도 학교 통·폐합으로 감축한 교사 수,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교사 수 등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·도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